



근무 중에  
다쳤습니다

#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 
시간 손실이 발생하고/하거나  
치료를 받은 경우, NYS  
산재보상 위원회에 **종업원  
청구(Employee Claim)**

**양식 C-3**를  
제출하세요.

WCB.NY.GOV | (877) 632-4996



Workers'  
Compensation  
Board

# 양식 C-3 제출 방법은 간단합니다

## 온라인 제출

wcb.ny.gov에 접속해 양식 C-3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. 청구를 제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

## 우편 제출

양식 C-3은 각 직장, wcb.ny.gov 및 산재보상 위원회 사무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전화: (877) 632-4996

담당자가 양식 C-3 제출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답변해 드립니다.

## 기억하세요

근무 중 다친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

## NYS 산재보상 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

전화: (877) 632-4996 월요일~금요일, 오전 8시 30분~오후 4시 30분

이메일: [advinjwkr@wcb.ny.gov](mailto:advinjwkr@wcb.ny.gov)

인터넷: [wcb.ny.gov](http://wcb.ny.gov)

 [facebook.com/NYSWCB](https://facebook.com/NYSWCB)

 [twitter.com/NYSWorkersComp](https://twitter.com/NYSWorkersComp)

 [instagram.com/NYSWorkersCompBoard](https://instagram.com/NYSWorkersCompBoard)

 [youtube.com/NewYorkStateWorkersCompensationBoard](https://youtube.com/NewYorkStateWorkersCompensationBoard)

 WCB 알림 구독처: [wcb.ny.gov/Notify](http://wcb.ny.gov/Notify)

뉴욕주 산재보상 위원회(Workers' Compensation Board)는 보상 급여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법규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종업원과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산재보상 위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[wcb.ny.gov](http://wcb.ny.gov)를 방문하세요.